

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“관세 분야 개정사항 안내”

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을 발표하였습니다. 금년도 세법 개정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, 민생경제 회복, 미래 대비 및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, 이 중 관세와 관련된 개정사항 위주로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I. 2023년 세법 개정 기본방향

1.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**수출·투자·고용 지원**
2.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·중산층 **세부담 경감,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**
3. 인구·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**출산·양육, 지역균형발전** 지원
4. **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**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II. 관세 관련 세법 개정안

1. 납세자 권익 보호

- (1)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(관세법 §42의2①)
- 보정기간(신고납부일부터 6개월)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확대*
 - * (현 행) (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) 20%, (6개월~1년 6개월) 10%
 - * (개정안) (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) 30%, (6개월~1년) 20%, (1년~1년 6개월) 10%

현 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: 20% ○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: 10% 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감면을 상향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: 30% ○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: 20% ○ 보정기간 경과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: 10%

- 개정이유: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
- 적용시기: 2024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

- (2)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(관세법 §247③)
-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* 폐지
 - * 기본수수료(소요시간×2천원) + 실비상당액

현 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 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산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기본수수료(소요시간×2천원) + 실비상당액 (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교통비·숙박비·실비) ○ 부과외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검사장소가 영업용 보세창고인 경우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화주가 보관료를 부담하므로 화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외 ②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	<삭 제>

- 개정이유: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
- 적용시기: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 분부터 적용

2. 조세회피 관리 강화

- (1)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(관세법 §56의2 신설)
-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*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
 - *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/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

현 행	개정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회덤핑 물품*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○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○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○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- 개정이유: 우회덤핑 차단을 통한 덤핑방지제도 실효성 제고
- 적용시기: 2025년 1월 1일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

(2)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(관세법 §116의2, 관세령 §141의5)

-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·포탈관세액 등 공개*

* 현행: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	<input type="checkbox"/> 명단공개 대상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자

- 개정이유: 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
- 적용시기: 영 시행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

(3)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(FTA특례법 §44)

-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* 근거 마련 * 2,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 또는 고의로 미제출한 자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(추 가)	<input type="checkbox"/> 부과 대상 추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받은 자

- 개정이유: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
- 적용시기: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증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3. 기타 개정사항

(1)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(관세법 §21①)

- 특례적용 사유 추가
: 불복신청·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= 결정·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

(2)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(관세법 §37의4①)

- ‘관세조사 시’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

(3) 용도세울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(관세법 §83①,②, §108②)

- 적용 대상 확대: ‘덤핑방지·상계·보복·편익 관세’ 추가
- 용도세울 신청제외 대상 명확화: 용도세울 전용물품으로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
-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: 용도세울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
(4) 품목분류 사전심사·재심사 제도 보완(관세법 §86)

-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(현행 관세청 훈령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의 법적근거 보완)
: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
: 이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

(5)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(관세법 §111②)

- (현행)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
- (개정)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

(6)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(관세법 §116, 관세령 §141의4)

-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
: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시 시정요구 가능
: 시정요구 미이행 시,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

(7) 선상 견본품 반출·채취 절차 마련(관세법 §161①·④)

- 대상 확대: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·반출 가능

(8)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(관세법 §175)

(9)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(관세법 §206①)

-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
: 국제징수법·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

(10)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

-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: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 위반

(11)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(관세법 §222의2 및 시행규칙 §73의3 신설)

-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마련
: 환적,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 허용
: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

(12)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(관세법 §246의2②, 관세령 §251의2)

-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,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
: 포장용기·운반수단, 운송수단 (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-국내판매가격 한도 내)

(13)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(관세법 §327의2·§327의3, 시행규칙 §87)

- 시정명령 위반 처분 대상에 추가: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

- 업무정지 기준 명확화

구분	1차	2차	3차	4차
지정기준 미달	3개월	6개월	1년	지정취소
지도·감독 위반				
시정명령 위반				
비밀유지의무 위반	1년	지정취소	-	-

(14)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(FTA특례법 §13)

- 대상 확대: '중소기업이 아닌 농·어업인' 추가

(15)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(FTA특례법 §36의2 신설, FTA특례령 §47의2 신설)

- 보정이자 면제사유

- ① 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자 귀책 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
-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

III. 세법 개정 추진 일정

1. 개정대상 법률 : 총 15개

(1) 내국세(13개)

- 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부가가치세법, 인지세법, 주세법, 교육세법, 농어촌특별세법, 국세징수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,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

(2) 관세(2개)

- 관세법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
2. 추진 일정

- 7월 27일(목) :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
- 7월 28일(금) ~ 8월 11일(금) : 입법예고(14일간)
- 8월 29일(화) : 국무회의
- 9월 1일(금) : 정기국회 제출

| 첨부자료 (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)

- [붙임 1] 2023년 세법개정안
- [붙임 2]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
- [붙임 3] 2023년 관세 관련 세법개정안
- [붙임 4]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
- [붙임 5] 2023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

| Contact



김성근 관세사

T 070-4353-5152
E skkim2@esein.co.kr



강은지 팀장

T 02-6011-3056
E ejkang@esein.co.kr